

한국의 기업 살인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제는 제정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

1. 우리는 왜 기업 살인법에 주목하는가?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그러나, 정부의 사고 대책은 자율안전과 규제완화를 주요 기조로 진행되어 왔다. 산재사망의 영역에서는 사실상 기업의 자율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장에서는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규정 보완이 반복되어 왔다. 재난참사의 영역에서는 삼풍백화점 사고나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이나 지하철 1인 승무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책이 제기 되었으나, 사고 이후 사회적 관심이 사그러 들면서 대책은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이제야 기술적 접근이나 개별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중요한 기조는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이고, 생명과 안전보다 돈벌이에 급급한 기업과 기업의 이윤 보장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전국에서 국가 안전 대 진단이 벌어진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만 수 십 종류에 수 백 페이지이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안전 관련 법안만 백 여개가 넘는다. 그러나 <죽은 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조직이나 사람은 없는> 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넘은 오늘의 현실이다. 그 뿐이라,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삼성병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벌받지 않았고, 2016년 검찰조사로 드러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밝혀진 진실에 비해 과연 누가 어디까지 처벌 받을 것인가의 문제는 답답한 상황이다. 매년 2,400명이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 산재사망도 사고당시에만 요란할 뿐 결국 그 어떤 책임 있는 처벌도 없이, 죽음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위험작업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무수한 산재은폐로 감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정부통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재통계를 보면 산업재해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산재통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노동자의 증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증가, 서비스 산업의 증가 등은 산재가 감소하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주고 있고, 노동부는 통계기준을 바꿔서 그나

마 은폐가 어렵다는 사망사고 숫자도 줄이고 있다. 그러나, 한 걸음 양보하여 사망사고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방대책의 효과와는 아무 연계가 없다. 이는 노동부도 인정하는 바다.

그 동안 집행한 예방대책 중 산업재해 감소와 연계하여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대책이 전무하다. 오히려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업재해가 늘어났을 뿐이다. 대표적으로는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화물, 버스, 쿵 서비스, 택배, 건설 장비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가 다발하는 직종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되어 산재통계에서 빠져 나간다.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면서 다단계 하도급으로 진행되는 건설업, 조선업 등에서 말단의 팀장은 개인사업자 면허로 등록되어 산재통계에서 빠져 나간다.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도 불법 체류 등등의 문제로 산재통계에서 빠져 나간다. 그러나, 현재 정부 산재통계는 이러한 고용구조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기존의 산재통계 기준을 변경해서 산재보상을 받은 사망도 매년 200명 내외를 제외하고 있다. 심지어는 변경된 통계기준으로 10년치 통계를 다시 조정했다. 다만, 사망을 제외한 통계는 기존 통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1] 노동부 산재통계 자료 취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노동부 산재통계 자료 취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년도	산재(명) ①	산재 사망(명) ②	경제적 손실액 (단위, 억원)	기준변경 통계③	사망통계 차이④
2015	90,129	2,066	203,955	1,810	-256
2014	90,909	2,134	196,327	1,850	-284
2013	91,824	2,233	189,771	1,929	-304
2012	92,256	2,165	192,564	1,864	-301
2011	93,292	2,114	181,269	1,860	-254
2010	98,645	2,200	176,186	1,931	-269
2009	97,821	2,181	173,157	1,916	-265
2008	95,806	2,422	171,094	2,146	-276
2007	90,147	2,406	162,113	2,159	-247
2006	89,910	2,453	158,188	2,238	-215
2005	85,411	2,493	151,288	2,282	-211
2004	88,874	2,825	142,995	2,586	-239
2003	94,924	2,923	124,090	2,701	-222
2002	81,911	2,605	101,016	2,605	
2001	81,434	2,748	87,226	2,748	
합계	1,363,293	35,968	2,411,239	*노동부는 2002년 이전	
평균	90,866	2,398	160,749	통계분류 없어 조정 못함	

① 산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

② 산재사망: 근로복지공단 산재사망 통계 (2012년 변경 전 통계 기준 적용)

③ 노동부 통계 변경 : 2012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에 10년 치 통계 변경 발표

④ 노동부 통계 변경 기준에 따른 산재사망 통계 차이

민주노총은 노동안전보건단체와 함께 2003년부터 기업 살인법 제정 운동을 계속해 왔다. 2012년부터는 기업 살인법 제정을 구호로만 외치지 않고 현실화하기 위해 입법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조합원 교육과 선전, 집회등도 진행해 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시민재해와 공무원 처벌도 포괄하는 입법 추진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 함께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왜 기업 살인법인가?> 라는 질문을 무수히 받아 왔다. 혹자는 민주노총이 재벌 대기업을 겨냥한 선정적인 구호로 기업 살인법을 외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문제제기도 받아 왔다. 그러나, 돌이켜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이 참혹한 죽음의 행진을 멈추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살인법 제정이 가장 중요한 열쇠다 라는 생각으로 돌아오게 된다. 기업에 대한 처벌 없이 예방대책과 안전규정은 서류로만 존재하고, 묻지마 규제완화는 사업장 안전보건 시스템을 붕괴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수많은 안전대책과 안전규정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열쇠는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지 않으면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사회적 가치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 바로미터가 기업살인법 제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수 백명의 무고한 죽음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인 옥시 불매운동은 살인기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는 징표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노가 기업 살인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성수역, 강남역 사고처럼 여론의 관심이 가라앉기만 기다렸다 다시 또 살아남는 기업과 정부의 행태는 반복되고, 이름 모를 노동자, 시민의 억울한 죽음은 지속될 것이다.

2.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 실태

현재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이 규제를 받는 것은 예방과 관련한 각종 법규 위반 점검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형 처벌, 작업 중지권 발동, 영업정지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실태는 참으로 암담하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은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법과 하위 규정만 보았을 때, 한국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엄청나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 집행은 상당히 미미하다. 더욱이 노동부는 2011년 형사 처벌로 되어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조항의 대부분을 과태료로 전환했다. 노동부는 과태료 전환 당시 그 사유로 형사 처벌로 진행되어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미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과태료 전환 이후에도 사업장의 처벌은 강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법인의 건수는 2004년에는 2,933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1건, 2013년 1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단위 : 명)

	계	기소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 인 증 지	공소 보류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구속	불구속									
2013	1	1	0	0	1	0	0	0	0	0	0	0	
2012	9	1	0	0	1	8	1	7	0	0	0	0	
2011	1,848	1,248	0	31	1,217	598	315	282	0	1	2	0	
2010	1,132	690	0	22	668	440	233	205	1	1	1	0	
2009	41	17	0	3	14	24	14	10	0	0	0	0	
2008	1,798	1,387	0	54	0	411	164	243	0	4	0	0	
2007	1,998	1,564	0	20	1,544	433	187	246	0	-	1	0	
2006	2,047	1,527	0	20	1,507	516	245	264	0	7	4	0	
2005	2,962	2,304	0	10	2,294	654	335	316	0	3	1	3	
2004	3,345	2,933	0	8	2,925	405	210	193	0	2	1	6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단위 : 명)

	계	기소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 인 증 지	공소 보류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구속	불구속									
2013	10,753	8,903	1	303	8,599	1,792	1,142	573	0	77	52	6	0
2012	11,158	9,089	2	215	8,872	2,048	1,294	693	0	61	20	1	0
2011	4,424	3,112	3	106	3,003	1,298	593	664	0	41	14	0	0
2010	2,563	1,686	0	67	1,619	865	445	396	1	23	6	6	0
2009	4,307	2,951	2	192	2,757	2,330	530	753	1	46	23	3	0
2008	4,251	3,248	2	172	3,074	995	359	578	0	58	8	0	0
2007	4,490	3,487	3	93	3,391	1,000	396	570	-	34	3	0	0
2006	4,496	3,368	3	116	3,249	1,119	507	567	-	45	9	0	0
2005	6,537	5,050	5	50	4,995	1,476	672	764	-	40	8	3	0
2004	7,687	6,606	15	89	6,502	1,056	447	558	-	51	15	10	0

2) 노동부 감독 및 처벌의 실태

- 사전 예고하는 노동부 점검에서도 점검 대상 사업장의 90%이상이 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위반사항에 대해 80%는 시정조치 이고, 과태료 부과는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사업장 평균 과태료도 95만원 수준이고, 시정조치는 사후 현장 개선에 대한 사후 점검도 없다.

[표 노동부 점검 결과]

년도	실사업체	위반업체	위반비율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과태료 금액	과태료 평균
2008	24,414	23,279	95%	22,505	1,041	1,117,588	1,073
2009	19,374	18,708	96%	18,059	986	1,160,944	1,177
2010	27,990	23,436	83%	19,591	7,219	5,612,056	777
2011	21,841	19,493	89%	16,086	6,777	7,412,014	1,093
합계	93,619	84,916		76,241	16,023	15,302,602	
평균	23,404	21,229	90%	19,060	4,005	3,825,650	955

3)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 산재사망 사고 발생 당시에는 사과와 보상을 운운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서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재판과정에서는 무혐의와 하급관리자의 소액 벌금으로 끝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의 처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고용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고, 원청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미미하다. 특히, 산재사망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 될 수 있는 각종 안전보건조치의 내용은 원청에게 책임부여가 되어 있는 일부 조항의 경우에도 하청과 공동 책임의 형태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한계는 양벌조항의 적용으로 기업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하청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을 처벌하기에 법적 한계가 있다. 또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적용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말단의 하급관리자만 처벌되는 결과로 귀결된다.

[표 1] 산재사망 처벌현황.

원청	사고	사고내용	처벌
코리아 2000	40명 사망	물류창고 화재	벌금 2,000만원
이마트	4명 사망	냉동기 수리 질식사고	산안법 위반 벌금 100만원
GS건설	4명사망, 25명부상	용접 폭발화재사고	처벌 없음
한라건설	12명사망, 8명부상	작업선 침몰 익사	하청업체만 처벌
현대산업개발	3명 사망	추락	원청 무혐의
대림산업	6명 사망 부상11명	가스폭발	원청 공장장 징역9월, 법인 벌금 3,500만원
삼성 불산	1명 사망 5명 부상	불산 누출	원청 사업주 무혐의
당진현대제철	1년 반 17명 사망	추락, 질식 등	원청 사업주 무혐의
청주 SK	8명 사망	폭발	원청 팀장만 처벌 원청 사업주 무혐의
청주 에버코스 지게차	1명 사망	사고은폐로 사망	사업주 살인죄 기소 적용제외
한화 케미칼	6명 사망	폭발 사망	공장장 집행유예. 법인 벌금 1,500만원
강남역 스크린 도어	1명 사망	스크린도어 외주화로 지하철 충돌	개인 잘못으로 결론

4) 지자체 영업정지 실태와 처벌의 문제

- 산재다발 사업장에 노동부 요청으로 지자체 장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제화 되었다. (2008년/산업안전보건법 51조의 2 영업정지의 요청)
- 서울 송파구는 2004년 롯데월드 놀이기구 무면허 업체 시공을 적발하여 영업정지를 한 바 있고, 2006년 놀이기구 탑승객 사망사고 발생하여, 긴급안전점검으로 영업중단을 결정한 바도 있다.
-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매년 노동부는 지자체에 일부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과징금으로 낮추어 진행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 처리결과가 미흡함에 따라 노동부 영업정지 요청 숫자도 감소 추세에 있다.

[표 영업정지 요청 결과 2012년 국정감사자료]

년도	요청건수	주요업체	지자체 영업정지 실시	미 실시 결과
2008	7개사고 관련 14개	서해종합건설 (주)코리아2000 케이티건설.	(주)코리아 2000 (이천 냉동창고 40명 사망) 등 6개 사업장 영업정지	- 과징금 4개 - 미회신 4개
2009	8개사고 관련 18개	SK건설 GS건설등	(주)산호시엔디 1개업체 영업정지	- 과징금 3개/- 미 회신4개 - 소송진행 3개/- 무혐의 4개
2010	5개사고 관련 8개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건설	없음	- 과징금 3개 - 미회신 1개/- 무혐의 3개
2011	4개사고 관련 5개	영창토건	- 풍창건업 - 영창토건	- 과징금 1개 - 무혐의 1개
2012	4개사고 관련 6개	아주환경개발 비엠펙건설등	-(주)비에스엔지	- 과징금 1개 - 진행중 1개/- 무혐의 3개
총계	24개사고 41 개 업체		5개업체	- 과징금 12개/-미회신9개 - 소송 3개/-무혐의10개

5) 작업 중지권 발동

-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조치중의 하나가 작업중지권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작업 중지권 발동은 사고 장소에 대한 최소한의 작업중지로 축소되어 있고, 사업주가 요청하면 대부분 작업중지를 해제하고 있다.

-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고의 경우로 한정해서 작업중지권이 발동되고 있을 뿐, 매년 2,400명이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의 작업중지권이 발동되는 사업장은 1년에 20건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현황은 파악하지 못함)

- 현대 중공업과 같이 하청 산재가 수 년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이 2016년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과태료 몇 천만원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다.

3.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투자 현황과 규제완화

각종 산재예방관련 법규에 대해 기업이 위반을 해도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기업은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할뿐 아니라, 안전보건에 대해 투자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수백만원 과태료, 벌금이나 공무원에 대한 정기 상납으로 해결 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늘리고, 보호구나 안전시설에 투자를 할 것인가.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다.

1) 안전보건 투자

- 2013년 아르곤 가스 누출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당진 현대제철은 1년 반 사이에 추락, 감전, 가스 누출 등 20여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했다. 그러나, 16,0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 보건관리자는 2명. 안전보건 팀의 투자 예산이 2012년에는 10억이었다가, 2013년은 0원이었던 것이 사고조사과정에서 밝혀 졌다.
- 백혈병등 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가 줄줄이 발생한 삼성전자는 산재인정 투쟁이 진행되고, 정부 역학조사가 실시되던 2013년까지 별도의 전담 보건관리 조직도 없었음,
-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안전보건 지출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84개소 대상. 2014년 7월 조사 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평균보다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투자 비율이 낮았다.

[표 -8 사업장 규모별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중/2014. 안전보건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

사업장 규모	매출액 (평균. 억원)	안전보건지출 총액 (평균, 억원)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지출 비중(%)
50인 미만	180.5	0.493	0.27
50-99인	451.2	1.822	0.40
100-199인	961.6	1.393	0.14
200-299인	2,649.2	2.643	0.10
300-499인	5,831.6	9.246	0.16
500-999인	10,759.9	8.578	0.08
1,000인 이상	55,715.4	32.468	0.06
전체	13,838.7	9.792	0.07

- 2012년 제조업 산업안전보건 동향 조사 (3년 주기 조사) 에 따르면 500인 이상 기업 23%는 2011년 안전보건지출 비용 5,000만원 미만을 사용했다. 500인 이상 기업 25%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없고, 11.6%는 타 부서 포함 형태로도 없었다.

- 2012년 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 동향 조사 (3년 주기 조사)에서는 500인 이상 기업 70%가 2011년 안전보건지출 비용 5,000만원 미만이었다. 서비스업의 안전보건 투자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500인 이상 기업의 72.5% 안전보건 전담조직 없고, 54.3%는 타부서 포함 형태로도 없이 전무했다. 500인 이상 기업의 4.9%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도입했다.
- 2012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동향 조사 (3년 주기 조사)에서는 공사금액 800억-1,500억 이하 공사 2011년 안전보건 지출비용 5,000만원 미만 23.2%였다. 또한, 공사금액 120억 - 800억 미만 공사 2011년 안전보건지출 비용 5,000만원 미만 35%이였음이 드러났다.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 사업장에서 안전교육, 검진, 안전시설, 보호구 지급등 안전보건조치를 실질 담당하는 것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다. 그러나, 기업규제완화 특별 조치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도 1개월에 1-2회 방문 점검하는 대행기관 위탁이 허용 되어 있다.

[표- 10.2014. 08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 대행 현황/
단위 개소.명, 괄호안 300인이상]

구분	선임신고 사업장수	자체 선임 사업 장수	선임 신고 대비 비율	안전·보건관리자수				위탁관리 사업장수	선임 신고 대비 비율
				계	전담	겸직	공동		
안전관리자	19,429 (1,422)	4,510 (966)	23%	5,144 (1,480)	3,500 (1,401)	1,632 (79)	12 (0)	14,919 (456)	76%
보건관리자	12,716 (1,073)	2,451 (667)	19%	2,933 (1,063)	2,133 (995)	798 (68)	2 (0)	10,263 (406)	80%

- 선임 대상 사업장중에서 1,000인 이상 사업장중에서도 28개 업체가 안전관리를 31개 업체가 보건관리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노동부 점검결과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지엠 대우 자동차, 현대 건설, 두산 중공업등 대기업도 보건관리자 없는 것이 드러났다.

[표- 11 2014.08 안전보건관리 위탁 대행 현황]

구분	계	50 ~ 99인 사업장수	100 ~ 299 인 사업장수	300 ~ 999 인 사업장수	1000인 이상 사업장수
안전관리자	14,919	9,196	5,267	428	28
보건관리자	10,263	4,426	3,203	375	31

- 노동부의 점검과 감독이 미미한 가운데에도 2012년- 2015년 7월까지 보건관리자 미 선임등 위반 사업장이 282개 적발되었다. 그런데, 대기업도 보건관리자 미 선임 위반이 줄줄이 적발되었으나, 과태료는 수 백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 대기업의 경우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아 실제 사업장 상시근로자는 훨씬 더 많은 것이나, 기업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1-2인 정도의 보건관리자 선임도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과태료는 360만원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 1-2개월 급여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로 적발 이후에도 개선 없이 반복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

4. 민주노총의 기업 살인법 제정운동의 경과와 문제의식

민주노총은 2003년 영국의 기업살인법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 매번 사고에서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그 주장은 다분히 선언적이었다.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본격화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화된 것은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기업이 2,000만원의 벌금에 그친 사실과 2011년 인천공항철도 사고에서 5명의 하청 노동자가 심야 선로보수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2012년 이마트 냉동 설비 4명 사망사고에 직면하면서 부터이다. 사망사고, 특히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집단적으로 발생해도 기업, 특히 원청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2012년 원청의 책임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금속 법률원, 교수진, 노무사등으로 연구진을 꾸려 공동으로 법안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개정안을 정식화 했고,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국회에서 3개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시민재해를 포괄하고, 공무원 처벌도 포함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 청원운동을 중재대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 함께 진행해 왔다. 2013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의 기초는 첫째,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 특히 최고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어야 하다 둘째, 하청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을 처벌해야 한다. 셋째, 가중처벌, 징벌적 손해배

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에 원청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하청 산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이에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2개 법안이 같이 발의되었다. 국회 법안 발의와 병행하여 조합원 교육, 언론사업, 집회 등등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2014년에는 기업 살인법이 제정된 국가인 캐나다, 호주, 영국을 초청하여 국제 포럼을 개최하면서,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게 된 문제의식과 입법 추진 경과, 법 적용 현실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색은 이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운동으로 이어졌다. 법안을 재 정비하고, 더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입법 청원운동을 전개했으나, 19대 국회에서는 그 어떤 법안도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012년- 2013년 삼성, 현대제철, 현대중공업등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과,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최고위원까지 기업 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으나, 그 누구도 책임지지는 않았다.

5. 기업 살인법 제정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의미와 법안에 반영된 기초

첫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는 기업과 정부 정책 및 조직의 구조적인 살인행위

무엇보다 기업 살인법 제정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는 기업과 정부 정책 및 조직의 구조적인 살인행위” 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각종 사고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협소한 안전규정 준수여부나 기술적 위반 등을 중심으로 처벌해 왔기에 처벌대상도 하급직원이 되고, 처벌형량도 낮았다. 심지어 산재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무혐의가 되고, 사고이후 점검에서 안전규정 위반으로 건당 5만원에서 10만원 안팎의 과태료 처분을 모아 발표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마트 냉동설비 수리 작업 중 4명의 사망사고에 대해 이마트가 받은 처분은 사고이후 점검결과로 받은 100만원 과태료 처분으로 그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처벌이 반복되다 보니, 강남역 사고도 안전 메뉴얼 준수여부가 쟁점이 되고, 결국 사망한 노동자의 과실로 사건 종결이 되는 결과가 되었다. 구의역 사고에서도 초기 서울 메트로가 2인1조 작업 안전 메뉴얼을 안 지켰다며 하청업체나 사망한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상황으로 이어졌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조사와 처벌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고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철도사고에서는 사고조사를 받던 기관사 노동자가 자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위험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산재사

망과 재난참사가 사고당사자나 말단 관리 책임 당사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충분히 조직적, 구조적으로 예방 가능한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산재사망과 재난참사가 개인의 잘못이나 우연적인 요소, 혹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안전규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나가야 예방대책을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도록 강제 할 수 있다. 사고가 하나 발생하면 관련 규정을 하나 더 만드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산재예방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 결국 그 규정을 실질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안전보건체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입맛에 따른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공무원이 인 허가나 감독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동일하다.

둘째. 처벌만이 능사인가? 한국에서 처벌이 중요한 까닭은?

기업 살인법 제정 관련 논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처벌강화는 예방대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라는 문제의식이다. 두 가지 방향에서 이러한 제기가 진행되는데, 하나는 예방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강화와 예방대책 강화는 즉각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 라는 문제 의식 속에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재은폐가 드러나야 한다. 예방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 안전감독을 강화 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 등등의 제안이 제기된다. 노동자, 시민 재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가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그 동안 민주노총과 안전보건 단체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투쟁을 해나가고 있다. 다만,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할 것은 너무나 구멍이 많은 안전감독과 현장에서 휴지조각처럼 되어 있는 많은 안전규정의 대부분이 기업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항들이 기업이 해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반시 기업에 대한 처벌이 현행을 유지한 상태라면 감독도, 안전규정도 사상누각을 다시 한번 더 쌓게 되는 기존의 실패한 예방대책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처벌 강화는 기업이 각종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정부 감독이 현장의 실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안전과 관련하여 선진 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국의 예방대책들이 실효성을 갖는 것은 이미 안전시스템이 사업장에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 기반에는 위반 시 기업 활동에 큰 장애를 받을 정도로의 처벌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규정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과연 규정 위반에 대한 기업의 처벌에 대해서는 비교해 보았는가 라고 말이다. 특히, 전문가들의 오류중의 하나는 특정 조항이나 법안에 대한 단순 비교이다. 민사 소송, 집단 소송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안들이 보장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감독과 처벌도 훨씬 강한 외국의 전

반적인 문제를 같이 고찰하면서 논의가 진행될 때 한국에서 왜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전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형사 처벌의 강화 외에 영업정지, 과징금, 명단 공표등 다양한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제기이다. 개인적으로는 처벌의 유형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로 고정화된 주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전에 있는 다양한 처벌 방안의 현실을 고려해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중대재해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권이 노동부에 있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자체의 경우 기업의 세금을 주요한 재원으로 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파장 등을 정치적으로 우선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영업정지 요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고, 그 대상도 대기업은 다 빠져 나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했으면 한다.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실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도 영업정지가 있고, 그에 갈음하여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여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 통과와 하위 시행령 규정을 통해서 전경련, 경총, 환경부가 이 법을 무력화 시켜 버렸다. 이러한 사항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의 경우에도 현재 산재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제도가 있고, 우원청 기업도 공표하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 하는 입법예고도 된 상태이다. 그러한, 현실에서 노동부의 명단 공표를 보면, 언론에서 주목했던 기업들은 명단에서 빠져 있고, 잘 들어보지 못한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하나는 현행의 명단 공표가 원 하청 산재가 제대로 합산되어 공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명단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과 연관된 재해>를 공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 대기업들은 기업이미지를 위해 <범위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재해>로 만들어 명단 공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한다. 기업을 조직적으로 처벌하는 다양한 유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병과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고, 현재 제출되어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간의 고민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제출되어 있는 명단공표와 영업정지 요청이 <하여야 한다> 로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변화이지만, 현재 처벌 규정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그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하지 않고, 법조문에 최대한 담아내는 방안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린다.

셋째, 현행법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업의 처벌 강화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새로운 법 제정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에 검찰과 법원의 문제도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그러나, 이 문제제기는 한편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당

초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당시 노동부의 입장이 이리했다. 그러나, 몇 년동안 공방이 지속되면서, 현재 노동부도 현행의 법으로는 하청산재에 대한 원청 처벌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또한 원청 처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으나. 기업을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현행의 법 규정과 논리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처벌과 관련된 법의 한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해진 해운에 대한 처벌문제가 가장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치목적으로 유병언 잡기에 생난리를 쳤던 정부와 각종 죄목을 이 잡듯이 뒤져 항목을 늘려서 처벌형량 더하기로 포장하려 했던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이러한 반복은 기존에 그나마 처벌 형량이 강했다고 하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등 여러 사고의 반복을 보여준다. 기업 살인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 밖에도 성폭력 처벌 특별법을 사례로 들어 여타의 법이 현실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다. 2014년 기업살인법 국제 포럼을 하면서, 이미 기업살인법이 제정된 영국, 호주, 캐나다등을 초청하여 법 제정운동의 경과도 듣고, 현재 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의식을 단편적이거나 공유할 수 있었다. 2003년 가장 먼저 이 법을 제정한 캐나다의 경우 법 제정과정에서 실제 수사, 재판 등에 대한 하위 규정 등을 꼼꼼이 규정하지 못하여, 실질 법 적용과정에서 난항이 있는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존의 선례를 바탕으로 보완해 나가야할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기업 살인법 이제는 제정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가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한 획을 긋지 않는다면, 전방위로 뻗어나가는 기업의 폭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이 전문가의 법 논리 대결에서만 그치지 않고, 법 제정을 위해 무엇이 더 준비되어야 하는 가라는 논의가 더욱 가속화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법안 발의에만 그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정치행위로만 한정했던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실질적 입법으로 열매를 맺는 20대 국회가 되길 기원한다.

첨부 1. 2013년 민주노총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첨부 2. 외국의 기업살인법 비교표

첨부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첨부 1. 2013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및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근절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 사고 발생의 가중처벌) ①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개인 사업체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법인 사업체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사업체 또는 수급인의 종사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²⁾

-
-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서 종사자라고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급인에는 하수급인도 포함된다.

제3조(책임의 범위) ①사업장 내의 시설물, 장비, 차량, 화학물질의 결함이나 그 관리와 운용의 소홀로 인하여³⁾ 제2조 제1항 각 호에 기재된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

업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⁴⁾ 다만,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가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업주의 책임)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사업체 또는 수급업체의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법인을 포함한다)에게도 금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사업주(법인을 포함한다)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손해배상 책임의 가중) 제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사업 경영 담당자는 그 사업체와 연대하여 사상을 당한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배상책임을 진다.⁵⁾

제6조(허가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업

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추정)**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하 "생명·신체등"이라 한다)에 위해(제3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끼칠 정도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생명·신체등에 위해가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해는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5) 이른바 '징벌적 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징벌적 배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나마 유사한 것이 아래 조항이어서 그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체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영업소폐쇄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면허의 취소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⁶⁾

6)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영업정지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면허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 반 법률들을 참조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제5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체적인 골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참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허가 취소) ①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을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을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7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5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 7) 처벌사실 등을 공표하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아래 법률들과 호주 ACT지역 형법 중 'industrial manslaughter' 편의 'Court may order corporation to take certain actions'를 참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부 2. 외국의 기업살인법

[외국의 기업살인법 제정 현황]

1. 호주 준주 “산업 살인법”

국가	호주 (준주) *준주: 수도 캔버라가 있는 주
제정년도	2003년
법안명칭	산업 살인법/ Crimes (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 형법 1900 수정
대상	산업재해
피해대상	-종사자 (worker) / -하청 노동자 - 재택근무자/ -건설, 수습생/ -자원봉사자
처벌대상	①기업 (원청, 하청) ②정부 상급관리자 -장관, 정부기관 최고경영자 (CEO) -정부 또는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결정에 참여한 최고경영자 등 ③ 기업 - 감독, 업무책임자 - 기업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결정에 참여하는 자 - 기업의 재정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가진 자 - 기업의 지배인, 자산관리자, 청산인 등
적용규정	1) 고용주의 노동자가 - 고용주 혹은 고용주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된 과정에서 사망 하거나, 부상을 입은 후에 사망하고 - 고용주의 행위가 노동자의 사망을 야기하거나 - 고용주가 노동자, 다른 고용주의 노동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부주의, 또는 과실 2) 고용주와 상급관리자의 부작위 - 위험을 막거나 피할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작위 - 고용주의 행위, 소유물 또는 통제에 있는 것들 또는 고용주의 책임하에 있는 것들
처벌내용	- 벌금 : 개인- 25만달러 / 기업 - 125만달러 - 징역“ 25년 형 * 두 가지 처벌을 병과 할 수 있음 * 처벌의 기업 비용 최고한도 : 500만 달러 (약 60억)
기타 처벌	- 유죄 판결시 법원은 처벌에 대신, 혹은 부과하여 명령 가능 - 법원의 조치 공개 : 위법행위, 사고 결과, 처벌과 명령 (신문, 방송광고, 기업연간보고서 공지, 기업주주 공지 배부 - 법원 명령 실패 시, 산업안전위원의 신청으로 기업의 조치 이행, 기업의 실패 공표 명령
사망 만인률 변화	- 2003년 2.30 --> 2004년 2,00 --> 2009년 1.90 으로 감소

2. 캐나다 “단체의 형사 책임법”

국가	캐나다
제정년도	2003년
법안명칭	단체의 형사책임 법 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
제정배경	- 1992년 웨스트레이 광산에서 26명의 광산노동자 사망. - 사고 후 주 정부는 공개조사 선언. 광산의 내부 시스템, 안전보건 법 무시. 기업의 광부 협박과 해고 위협, 정부의 허술한 감독 등 종합적 문제 - 캐나다 노총과 철강노조의 " NO MORE WESTRAY" 투쟁 전개
원칙조항	- 217. 1 : 일을 하거나 업무 수행 방법 지시에 책임이나 권한 있는 모든 자는 그 사람들 또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일이나 업무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할 법적 의무 부여
대상	산업재해, 일반 재해
피해대상	종사자 (worker)/ 일반시민
처벌대상	- 공공단체, 법인, 협회, 회사 (company, firm) , 동업,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사단
적용규정	① 부주의 입증 기소 - 단체 대표자중 1인이 위법행위 당사자, 대표자중 2명이상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와 관련 - 책임있는 상급관리자가 위법행위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② 잘못을 입증 기소 (적어도 일부분 단체의 이익을 위한 의도, 상급관리자중 1명이) -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 하는 상급관리자가 위법행위 당사자 - 위법행위를 구체화 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작위를 하기 위해 지시하거나 - 단체의 대표자가 위법행위 당사자가 되거나, 되고자 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방지하는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내용	① 개인 - 부상 : 최대 10년의 징역 / - 사망 : 무기징역 - 무한벌금과 최대 15할의 피해자 과징금 ② 기업 - 전과기록 / - 보호관찰 / - 무한벌금과 최대 15할의 피해자 과징금
기타 처벌	- 위법행위로 고통 받은 자들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 - 단체의 추가적인 위법행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 기준, 절차 마련 - 정책, 기준, 절차 대표자와 논의, 이행을 법원에 보고, 준수할 상급관리자 지정 - 일반인에게 공포 : 위법행위, 법원 판결, 재발 장치를 위한 정책. 기준, 절차
사망만인률 변화	- 2003년 6.10--> 2004년 5.80으로 감소

3. 영국 기업살인법

국가	영국
제정년도	2007년
법안명칭	기업 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Manslaughter / 스코트랜드: Homicide
제정배경	-1987년 엔터프라이즈 여객선 침몰 승객 150명, 선원 38명 사망: 법원 과실치사 위반 없음 - 1997년 철도사고 자동경보시스템 문제 7명 사망, 151명 부상: 법원 과실치사 위반없음 - 2001년 철도사고 이상 확인된 열차선로 탈선 4명 사망, 70여명 부상 : 법원 기업 과실치사. 임원 과실치사 모두 위반 없음 - 영국노총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살인법 제정운동
원칙조항	- 제1조3항 한 개인의 행동 초점 보다 상위 경영진의 조직 관리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대상	모든 사고 대상
피해대상	사람 (person 노동자, 시민 구분 없음)
처벌대상	기업, 정부 (정부부처의 서비스), 경찰(수용자, 구금자들), 동업회사,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개인은 기업살인법 대상 아님. 기업살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각각 판결 가능
적용규정	- 사람의 사망을 유발 - 사망자에 대해 해당 조직체의 관련 관리의무에 중대한 위반(기대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 고위 경영진 (의사결정, 실질적 관리, 구성)에 의해 조직체가 관리 구성되는 방식으로 사망을 유발하고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처벌내용	- 벌금의 상한선 없음 - 의회지침 상 기업의 1년 총 매출액 5%- 10%범위/ 악의적인 경우는 10% 이상 * 양형 고려요소 - 사망 1명 이상이거나 부상 동반 - 감독관, 노조, 노동자, 일반사람의 경고나 조언에 주 의하지 않은 경우 - 안전문제 비용 삭감 - 안전관련 허가를 고의적으로 안 받거나 미 준 수 -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부상 (개인적 환경, 흡사당하기 쉬운 사람 포함) - 기업 주식 소유자의 재정 손실, 기업의 벌금으로 인한 가격 상승, 민사상 보상에 대한 책임은 처벌 양형에 관련 없음 - 악성 사고에서는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오더라도 수용가능함
기타 처벌	- 위반 구제 명령 : 재발방지 대책 집행 기한을 정하고, 이행증거 제출 요구, 구제명령 불 이행 시 기소. 벌금 - 유죄 판결 공개 명령: 유죄 판결 사실, 위법행위 사항, 벌금, 구제명령 조건 등에 대한 공개 명령. 불 이행시 기소 벌금
사망만인률 변화	- 2007년 0.70 --> 2008년 0.60 --> 2009년 0.40으로 감소

* 영국 기업 살인법 적용 사례

년도	기업명	사고내용	처벌
2011	이튼 앤 코츠월드 홀딩	해자가 붕괴되어 시험광구 샘플 채취하던 노동자 사망	- 385,000 파운드 벌금 - 기업 연 매출액의 250%
2012	R v JMW Farms	돼지 사육농장 노동자 리프트에서 떨어진 금속 휴지통에 맞아 사망	- 187,500 파운드 - 기업 연매출액의 18%
2012	리용 스틸	물이 새어 틈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붕에 올라간 노동자 추락사망 - 기업살인법, 산업안전보건법, 고공안전규정 위반을 각각 기소	- 480,000 파운드 - 산안법 위반 건은 계류중
2012	R v PS & JE Ward	끌고 있던 수압트레일러 전선을 건드려 감전으로 원예 노동자 사망	- 진행 중
2013	R v Murray and Sons	노동자가 동물사료 배합기 빨려 들어가 사망	- 100,000 파운드 벌금
2013	R v Princes Sporting clup Limited	고무보트를 타고 있던 소녀가 호수로 떨어져 사망 (야광헬멧 미착용, 산업안전담당자의 사고 이전 경고 무시)	- 135,579. 69 파운드 (회사의 전체 자산 총액) - 유죄사실 공개명령
2014	모바일 스위퍼즈		- 183,000 파운드 벌금 (회사 재산이 12,000 파운드였음) - 2개 지방신문에 공표명령 - 이사 자격정지 5년

4. 한국의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 현황

1)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처벌

년도	실사업체	위반업체	위반비율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과태료 금액	과태료 평균
2008	24,414	23,279	95%	22,505	1,041	1,117,588	1,073
2009	19,374	18,708	96%	18,059	986	1,160,944	1,177
2010	27,990	23,436	83%	19,591	7,219	5,612,056	777
2011	21,841	19,493	89%	16,086	6,777	7,412,014	1,093
합계	93,619	84,916		76,241	16,023	15,302,602	
평균	23,404	21,229	90%	19,060	4,005	3,825,650	955

2) 주요 산재사망 처벌 결과

원청	사고	사고내용	처벌
코리아 2000	40명 사망	창고 폭발 화재사고. 샌드위치 패널구조	2,000만원 벌금
이마트	4명 사망	냉동기 수리 질식사고	산안법 위반 벌금 100만원
GS건설	4명사망, 25명부상	용접 폭발화재사고	처벌 없음
한라건설	12명사망, 8명부상	작업선 침몰 익사	하청업체만 처벌
현대산업개발	3명 사망	추락	원청 무혐의
대림산업	6명 사망 부상11명	가스폭발	원청 사업주 불기소
삼성 불산	1명 사망 5명 부상	불산 누출	원청 사업주 무혐의(시민단체 고발)
당진현대제철	1년 반 17명 사망	추락, 질식 등	원청 사업주 무혐의 (시민단체 고발)
청주 SK	8명 사망	폭발	원청 팀장만 처벌 원청 사업주 무혐의(시민단체 고발)

3) 산재사망에 대한 영업정지 결과

년도	요청건수	주요업체	지자체 영업정지 실시	미 실시 결과
2008	7개사고 관련 14개	서해종합건설 (주)코리아2000 케이티건설.	(주)코리아 2000 등 6개	- 과징금 4/ - 미 회신 4
2009	8개사고 관련 18개	SK건설 GS건설등	(주)산호시엔디 1개	- 과징금 3/- 미 회신 4 - 소송진행 3개/- 무혐의 4개
2010	5개사고 관련 8개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건설	없음	- 과징금 3 - 미회신 1/- 무혐의 3
2011	4개사고 관련 5개	영창토건	- 풍창건업/ - 영창토건	- 과징금 1/ - 무혐의 1
2012	4개사고 관련 6개	아주환경개발 비엠건설등	-(주)비에스엔지	- 과징금 1 - 진행중 1/- 무혐의 3
총계	24개사고 41개 업체		5개	- 과징금 12/-미 회신9 - 소송 3/-무혐의10

4) 재난사고 처벌 현황

사고	사상자	처벌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502명 사망/6명실종 937명 부상	삼풍백화점 회장 7년6월, 사장 7년 선고 서초구청장 징역 10월
1999년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	유치원생 19명 포함. 23명 사망 5명 부상	수련원 대표 징역 1년 선고. 다른 책임자 금고 집행유예
1994년 성수대교 붕괴	32명 사망 17명 부상	현장소장, 생산부장 금고 2년 나머지 책임자 집행유예
1995년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101명 사망 202명 부상	현장소장 징역 5년 나머지는 징역2-3년. 벌금형
1993년 서해 웨리호 침몰	292명 사망	회사경영진, 해우 항만청 공무원 집행유예

5) 세월호 재판 경과

가. 선장, 선원 재판 1심결과

대상	적용 범죄	형량	비고
이준석 선장	유기치사	징역 36년	승객 사망의 결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기호 기관장	살인, 유기치사	징역 30년	살인죄는 동료 승무원 그대로 투고 퇴선, 해경에게도 알리지 않은점 적용
13명의 선원	유기치사	징역 5년-20년	
청해진 해운	해양환경법 위반	1,000만원	기름유출 관련 양벌 규정 적용

나. 청해진 해운 1심 재판 결과

대상	적용 범죄	형량	비고
김 한 식 대표이사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 선박 매물 선박안전법, 업무상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	징역 10년 벌금 200	- 기업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대표하는 자연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
김 영 봉 상무이사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 선박 매물, 선박안전법	금고 5년 벌금 200	
5명 직원	업무상 과실치사등	금고 2년 (집유 3년)- 징역 6년	- 과적 관련 물류팀. 안전운행 관련 해무팀등 팀장급 직원 다수

다. 청해진 해운 영업재개(?)

-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 2007년 한강 수상택시 2007년 까지 독점 영업권

- 세월호 침몰이후 운항 잠정 중단했으나, 최근 영업재개 서울시에 요청
- 세월호 침몰이후 전 항로 면허 반납 발표. 정부 5월 여수- 거문도 항로 면허 취소
- 청해진 해운 지난 8월 면허취소 부당하다 행정소송 제기

첨부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2016년 수정안

<p>법률 제 호</p> <h2 style="text-align: center;">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h2>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을 행하는 장소에서 안전 관리 및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시설물 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소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라.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 사.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선박 아. 「항공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항공기 <p>2. “위험물업소”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p>

한다.

3.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함은 제2호의 다중이용시설 및 제3호의 위험물업소와 다중을 상대로 하는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위나.항의 관계가 있는 자

6.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③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위 각 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④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위 각 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2명 이상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제5조(법인의 처벌) 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② 법인 또는 기관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2. 5년 이하의 보호관찰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

제6조(공무원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원료나 제조물의 취급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 ② 제1항의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영업소폐쇄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면허의 취소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